2026년 간판개선사업(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제작.설치

시 방 서

■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2. 용어의 정의
3. 제작 . 설치의 시공
4. 시공관리
5. 공기연장
6. 설계변경 및 정산
7. 품질관리 및 검사
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9. 사업수행 일반지침
10. 쟁의 발생시
11. 사후관리
12. 기타사항

■ 특기 시방서

■ 총괄사항

1. 금속공사

2. 재료

3. 형태

4. 제조

5. 도장

6. 검사 및 시험

7. 벽면보수

8. 철거공사

9. 기타사항

읽 박 지 맹 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간판개선사업(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에 따른 간판제작 설치시업에 적용한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과 업 명 : 2026년 간판개선사업(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간판제작·설치

1-3 사 업 구 간 : 광양숯불구이 축제거리 일원 133개소

1-4 주요사업내용 : 기존 간판 철거 및 전면간판 신규 설치

1-5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용어의 정의

2-1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도급계약서, 계약조건,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2 시방서

"시방서"라 함은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시공업체 특수조건, 유지관리계획서로 분류한다. "일반 시방서"리 함은 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 시방서"라 함은 당해 시설물 제작 . 설치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전문적인 사항,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미, "유지관리계획서"는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시공시와 시공 완료후의 관리운영방법과 각 시설물의 관리방향 등의 사항들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2-3 감독관

"감독관"이란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설물 제작 . 설치 현상에 주재하면서 과업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4 발주청

"발주청"이란 본 공사(2026년 간판개선사업)를 시공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하고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5 시공업체

"시공업체"란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업체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2-6 지시

"지시"란 발주청에서 지정한 감독관이 시공업체에 대하여 시설물 제작 . 설치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7 승인

"승인"이란 시공업체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8 입회

"입회"란 감독관 또는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도급자재

"도급자재"라 함은 시공업체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3. 제작 . 설치의 시공

3-1 감독관의 임무

(1) 시설물 제작 . 설치의 감독관은 시설물 제작, 설치공사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시설물 제작 . 설치의 감독관은 감독과 관련한 행정관리, 공정관리, 현장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본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업체의 임무

(1)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 완성된 과업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제작 전 실계 도서를 준수하여 시행하되 오차범위를 축소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로간판 글자체, 글자색 및 바탕색을 상가 주(건축주)와 협의 후 발주청에 보고, 승인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3)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시공업체가 민, 형사는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시설물 제작 . 설치의 목적 등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업체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3 시설물 제작 . 설치

(1)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 착수 전에 착수계, 시공계획서, 특기 시방서, 유지관리계획서를 1주일 내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제작 .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시공에 앞서 목적물의 실시설계도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시공한 시설물 제작 . 설치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시공업체가 임의로 시공한 시설물 제작 . 설치에 대하여 발주청(감독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

시가 있을 때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행하여야 한다.

(5) 현장상황 민원 등 특이사항 발생 및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설치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청(감독관)과 시공업체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4 시공계획서 등

(1) 시공업체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설물 제작 . 설치 전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수립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 등)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시공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급계획 등)
- 인력동원계획
- 공정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간리계획(유해위험방지대책 포함)
- 기타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특기 시방서

(4) 유지관리계획서

3-5 전문기술자의 배치

(1) 시공업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주된 공정에 상응하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중 적합한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업체의 사용인이 시공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6 시설물 제작 . 설치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업체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소정 양식에 의거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 제 법규의 준수

(1)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3-8 설계도서 등의 비치

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중 감독관, 시공업체의 현장직원 등 수행요원들이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 할 수 있도록 해당 시공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

4-1 시설물 제작 . 설치기간

시공업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수하여 계획대로 시설물 제작 . 설치를 추진하고 계약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관이 전체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완료 또는 시공 순서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작업시간

(1)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공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이 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업체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공정관리

(1) 시공업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시설물 제작 . 설치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 중 예정공정표에 의한 과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관은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업체는 부진 사유서와 수정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현장관리

(1) 시설물 제작 . 설치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업체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노무관리

(1)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시공업체에게 있다.

(3) 감독관은 시공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업체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6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업체는 시설물 제작 . 설치 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기존 시설의 조업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인허가 수속은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시공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4-8 시설물 제작 . 설치의 변경

(1) 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설치 작업 전에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시공기간 중에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개정이 있을 때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공하고 법령의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및 시공변경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9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중지

(1) 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제작 . 설치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 제작 . 설치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타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업체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10 시설물 제작 . 설치의 기록

(1) 시공업체는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제작 . 설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3부를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11 도면관리

(1) 시공업체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상이할 때,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묻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12 준공서류 제출

준공 전 시공업체는 다음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 격	수 량	비 고
1. 기록 사진첩	A4	2부	원색본 및 USB 1매
2. 현황판 (개선 전과 후 현황 판넬)	A1	2식	
3. 간판 디자인(안) 책자	A4	3부	
4. 각종 동의서 (최종디자인 동의서,광고물 설치동의서)	A4	2부	

4-13 하도급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과업범위

(2)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기타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기연장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 요건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공기연장의 타당성을 검토 공기 연장을 승할 수 있다. 공기 연장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6. 설계변경 및 정산

6-1 설계변경

(1) 시공업체는 다음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을 실시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3)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의 변동이 없이 단순한 물량변동으로 비용만이 감액 되는 다음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생략하고 준공 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1) 단가에 변동이 없는 단순한 시공물량의 변동

2) 설계수량이 도면에 의해 산출되지 않는 사항

3) 설계서에 정산토록 명시한 사항

(3) 시공업체는 변경된 설계에 의거 시공 변경승인을 받아 발주청에 계약 변경 의뢰하여야 한다.

(4) 시공업체는 설계변경 절차로 인하여 시공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변경 이전에 변경시공을 할 수 있다.

6-2 정산

시설물 제작 . 설치비의 정산은 도급계약의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7. 품질관리 및 검사

7-1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의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7-2 기성 및 준공검사

(1) 시설물 제작 . 설치의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8-1 안전관리

(1) 시공업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본적으로 안전전담요원(안전기사 및 유경험자)을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 요원(기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을 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8-2 안전조치

(1) 시공업체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당해 시설물 제작 . 설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 이상의 규모일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제작 . 설치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물방지망, 조명시설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시공업체는 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8-4 안전교육

시공업체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5 안전시공

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낙반, 가 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시설물 제작 . 설치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8-7 환경오염방지

시공업체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사업수행 일반지침

9-1 일반 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시설물 및 도시경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사업완료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완수된 사업자료 전체를 사전 검토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공업체는 필히 보완하여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감사.조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2 보안대책

(1) 본 사업 참여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 시방서, 계약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습득한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본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서 및 사업수행과정 자료는 시공업체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다.

(5) 사업 수행 시 작성한 자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 자료로 분류.보관토록 한다.

(6) 사업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7) 사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0) 사업 수행 중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진다.

10. 쟁의 발생시

본 시설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11. 사후관리

모든 시설물은 발주청의 시설물 사후관리의 제반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12. 기타사항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완료 후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청과 광고물실명제를 시행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특 기 시 방 서

■ 총괄사항

본 사업은 간판개선과 함께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목적물의 제작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간판 철거 후 건축물의 오염을 제거하고 미관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 설치하며, 관계자(발주처, 상가주민)가 유지관리에 대해 쉽게 이해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쉬트나 도장의 색채선정 및 재료의 선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정확한 결과물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간판의 이음새, 연결부속등이 시각에 저해되지 않도록 마감이 정교하고 미려하게 제작 • 시공한다.
5. 반드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국산 우수 제품을 사용하며 저가 중국 제품 사용을 지양한다.
6. 주민요청이 있더라도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7. 특정 대상지의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조사와 함께 협의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다.

1. 금속공사

1-1 자재

본 시방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도면상에 나타난 모든 자재는 KS규정 또는 지정제품을 사용한다.

1-2 프레임 제작

(1) 본 공사의 프레임 제작 시 사용되는 금속물은 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류는 도면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프레임 보강재의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 제작한다.

(4)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5) 라운드 부분의 절단 시는 밴드소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1-3 제작

(1) 가공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반드시 SHEARING CUT(재단)를 원칙으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2) CORNER(귀퉁이), ANGLE(모서리)부위는 그 배면을 처리하여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GASH(틈), 흠 등이 표면에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

(3) 절단, 천공, 보강, 고정물 등의 제작가공은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위한 ANCHOR ING(앙카), SCREWING(나사) 작업에 국한하고 가능한 공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1-4 조립제작

(1) 조립 제작 시 에는 모든 JOIN에 튼튼하여야 하고,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한다.

(2) 가공조립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HEIGHT(높이) : 0.5 ㎜
- WIDTH(너비) : 0.5 ㎜
- DIAMETER(지름) : 1.0 ㎜
- THICKNESS(두께): 0.05 ㎜

(3)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AL CHANNEL FRAME은 지정오차가 0.5밀리미터 이내로 제작하고, 양부재의 접합은 감독관이 승인한 제작도에 따라 접합한다.

(5) 조립 시 사용되는 피스, 너트 전량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한다.

(6) 외부로 노출되는 피스의 경우는 피스의 머리 부분이 면과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7)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치 자재

(1)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ANCHOR(앙카), 세트 앙카, SCREW(나사)]는 SAMPLE(샘플)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및 타당성을 조사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접합부는 SHOP-DRAWING(제작도)에 따라 흠 . 엇물림이 없도록 하고, 외부 충격에 의하여서도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되며, 또한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3) 본 설치공사에 사용 되는 ANCHOR BOLT(앙카 볼트), NUT(너트), WASHER(와셔) 등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 보강용 앙카 및 강판은 잘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 시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1-6 설치공사

(1)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 또는 후렉시블(파이프) 속에 배선해야 한다.

(2) 벽체에 설치시는 앙카 볼트(도면 참조)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용접

(1) 용접방법은 GAS용접, 전기용접, 알곤 용접 등 특기 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질향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브라켓이 부착된 각관을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세워 다시 용접하고,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마감한다.

1-8 현장 반입

모든 제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종이로 내부포장을 한 후 합판으로 상자를 제시하여 시공 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도록 한다.

2. 재료

21 알루미늄

- KS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 또는 KDS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3003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THK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컬러강판

- 폴리에스터 컬러강판 두께0.5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채널 및 문자에 부착하는 필름

- 시중에 유통되는 조명용 쉬트지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 디자인 과 동일한 색감의 필름을 사용하고, 동일 색감이 없을 경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유사색을 사용한다.

2.4 갤브스틸(STEEL)

- 설계도면에 준하여 사용하되 명기되지 않은 Steel은 일반 구조용 탄소강판(KSD3526) 두께1.2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GALV. 1.2 ~ 2T로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절단, 절곡, 도장, 가공하며 구조의 뒤틀림을 보강 하고 풍압에 문제없게 전기, 알곤용접하여 제작한다.
- V-CUT에 의한 절곡과 절단 시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되어야 한다.
- 라운드 부분의 절단 시는 밴드쏘우에 의해서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 외관은 견고하고 휨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5 PC커버

-문자용 PC는 광학산 두께3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채널사인 조명장치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 이하 LED

LED Module : 3 chip 3구 타입을 기본으로 화되 간판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 필요시 2구나 4구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기존으로 시공한다.

-연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원 확보를 위해 LED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 상호 보완하여 진행되도록 한다.

-LED모듈의 실리콘 충전물에 의하여 100%방수 되어야 한다.

2.7 안정기(SMPS)

-방수용을 사용하되 개별간판 전기소요량보다 10%이상 용량의 제품을 사용한다.

-간판과 전원공급 장치(SMPS)사이의 전선길이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8 AL고무스카시

-착색된 알루미늄판을 압축 고무판에 본드로 접착한 후, 도안된 윤곽선을 따라 CNC로 오려내어 입체문자 또는 형상을 만든다.

-상판은 실사출력물이나 칼라시트를 부착하거나 지정색상으로 도색할 수 있다.

2.9 시트 실사 출력 및 부착

-시트지는 STEEL 부착용으로 부착력이 강한 품질의 제품으로, 5 ~ 6년 이상의 강한 내구성과 유연성을 가진 시트지를 사용한다.

-실사출력은 오랫동안 색상이 선명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출력한다.

-실사출력이 시안과 동일한 색상으로 출력되지 않거나 하자 발생 시에는 재 출력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붙이고자 하는 피접착면의 표면에 오염이 되어있는 먼지 및 이물질(기름, 녹 등)을 제거한 후 시트지를 견고히 부착한다.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시트지 부착 시 면이 긁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시트지 끝 마감부분에는 실리콘을 가하여 부착한다.

-부착 작업 시 공기나 물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스퀴즈나 헤라로 충분히 밀어준다.

-실사 후 시트표면을 깨끗이 한 후 반드시 자외선 차단용 코팅을 하여 색상의 탈색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3. 형태(규격)

(설계도서, 모델별 도면 참조)

4. 제조

KS D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6063 또는 KS D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3003 또는 폴리에스터 컬러강판 두께 0.5mm이상의 제품 원자재를 모델 및 규격에 맞게 절단 가공 후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하며 절단면은 RORmt하고 정교하게 가공 연마 되어야하며 자재는 외표면에 인산염에 의한 방청피막을 형성한 후 내산성, 내습성, 내후성이 좋은 외부용 폴리에스터 계열 도료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 파우더 분체도창 또는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도장의

변색이나 탈착이 인정되는 기간이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도장 세부 지침

5.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Sign물에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공 이전에 자재 형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행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3) 도색 마감되는 경우

- 페인트의 탈착, 조기 퇴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하도 작업을 거쳐야 한다.
- KS 인증된 1급 도료 사용을 한다.
-오염이 심한 부분은 오염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마감코팅을 하도록 한다.

4)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착수해야한다.

5.2 재료

1) 도료는 친환경 KS 규격품으로 하고 KS규격품이 없을시 국산 최우량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재, 희석제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재, 세척제는 도료는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는 않는 것이어야 한다.

5.3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 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도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3)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5.4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과 사전협의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도록 유의 해야 한다.

4)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전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롤러도장이 되어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

6.1 검사

1) 구조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은 합리적인 샘플링에 따라 시료를 채취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시공성이 우려되어 감독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시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별검사

- 프레임에 대한 검사 - 샘플링한 제품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최종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가로 세로 두께 규격이 최종 규격도면 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철판을 절곡할 때 V-CUTTING후 절곡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판재연결 용접부위는 연마한 후 퍼티를 이용하여 연결흠을 최소화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프레임후면은 보강재를 설치하여 뒤틀림을 방지 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 지정칼라와 표면도장 마감상태가 최종 도면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3) 문자에 대한 검사

- 문자 상태(크기, 수량, 조명여부)의 도면 일치 여부 검사

4) LED, 조명등에 대한 검사

- LED 배열의 도면 및 수량과 규격 일치 여부 검사.
- LED SMPS의 규격과 수량 도면 일치 여부 검사.
- KS급 이상의 조명 사용 여부 검사.

5) 도장에 대한 검사

- 설계도서와의 이미지 연출 일치 및 완성도 여부 검사.

6-2 설치에 대한 검사

1) 설치 결합부위는 강한 풍압에도 변형되지 않게 용접 및 볼트로 고정한다.

2) 설치용 구조물의 하부는 두께 12mm 이상의 철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기둥과 동일한 칼라로 도장마감 한다.

3) 구조물의 설치수량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시 사용되는 볼트 등이 돌출되어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5) 시공 중 파손된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보수하지 않고 파손정도를 감독관과 협의한 후 보완해야 한다.

7.벽면보수

7-1. 벽면

1) 기존간판 철거 후 벽면의 컬러가 이색 발생시에 적용한다.

2) 기존간판 철거 후 벽면의 오염은 재질에 따라 바탕면 세척 및 유사색상으로 도장을 진행한다.
(단 설계시 반영된 면적의 경우 전체를 반영하여 도색 한다)

3) 간판의 철거 후 벽면의 훼손으로 인한 경우 자리 메움 후 보수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벽면 훼손으로 인한 자리 메움 시 기존 벽면의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철거공사

8-1) 철거공사

1) 도급자는 공사착공 전 착공에 필요한 모든 기계기구, 장비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착공 전에 대상 광고물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발생방지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부분(현장 주변 시설물, 광고주의 방해)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사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한다.

8-2) 철거 및 발생품의 처리

1) 현장에서 철거된 구조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한다.

2) 간판 철거 후 손상된 건축물에 대한 복구는 기본적인 청소 및 부분적인 실리콘 보강처리에 한하여 시행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철거된 간판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4) 그 밖의 타일, 줄눈, 기타 철거과정에서의 손상에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책임 시공한다.

9. 기타사항

9-1) 사전 설치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허가서류를 미리 점포주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토록 배려하고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

9-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공사 및 공사 일반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시공자와 감독관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준하여 시공한다.

9-3) 시공자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인사 및 재산 등의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진다.

(※옥외광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권장)

9-4) 중량물 시공 및 장비, 기타 소음 등 안전상 현저하게 주의가 요망 될 때는 사전에 점포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사후 민원소지를 제거한다.

9-5) 작업장 주변은 깨끗이 정리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자재 및 폐자재를 완전히 배출한다.

9-6)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 및 발주처가 있는 경우 의견에 따른다.